

영주시 공고 제2022 - 433호

「영주시 시세 징수 조례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고,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 년 3 월 16 일

영 주 시



영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개정이유

「지방세징수법」의 개정사항에 따른 조문을 상위법령 체계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(안 제5조제1항 및 같은 항 제1호)
 - “제71조의2제1항” 을 “제103조의3제1항” 으로 변경

3. 개정조례안 : 붙임 1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 2

5. 의견제출

이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주시장(참조 : 세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성명 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주소, 연락처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※ 보내실 곳

주 소 : 경북 영주시 시청로 1(휴천동 470)

영주시장(참조 : 세무과장)

연락전화 : (054)639-6381, Fax(054)639-6389

<붙임 1>

영주시 조례 제 호

영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영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및 같은 항 제1호 중 “제71조의2제1항”을 각각 “제103조의 3제1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|
| <p>제5조(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) ① 영주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 매각기관(이하 “전문매각기관” 이라 한다)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모집·선정하여 영주시(이하 “시” 라 한다)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 하여야 한다.</p> <p>1.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(이하 “예술품등” 이라 한다)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 일 것</p> <p>2. (생략)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 | <p>제5조(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) ① ----- ----- ----- 제103조의3제1항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----- ----- 제103조의3제1항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|